



##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 Korean Tax Newsletter

2022 년 5 월

#### • 예규·판례

가. 청구법인은 PP 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 2022 서 1944, 2022.05.10)

#### ■ 처분의 경위

-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특정카드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인 Priority Pass(이하 “PP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Priority Pass Card(이하 “PP 카드”라 한다)를 제공하여 동카드를 소지한 청구법인의 회원이 국내·외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PP 사에 연회비와 국내·외 공항라운지 이용료 (이 중 국외 공항라운지 이용료를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였으나, 쟁점수수료는 권리의 대가가 아닌 국외 제공용역(시설 이용)의 대가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2021.10.22. 2016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000 원(2016 년 제 2 기 예정분 000 원 및 확정분 00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 ✓ 청구법인은 PP 사로부터 국외에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는 것임) 청구법인의 특정 카드회원에 대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카드회원이 이용한 공항라운지 이용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쟁점수수료는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건의 경우 PP 사가 전세계 각 공항라운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PP 카드를 카드회원에게 제공하고, 청구법인 카드회원이 PP 카드를 제시한 후 공항라운지를 이용하면 청구법인이 PP 사에 라운지 이용료를 지급하는 4 자간 거래인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양자(코스트코와 회원) 간 거래이거나 3 자(차량제조사와 정비업체 및 고객) 간 거래로서 거래형태가 달라 이 건과 비교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나.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는 달리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국제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21 서 6772, 2022.05.12)

## ■ 처분의 경위

- 주식회사 AAA(이하 “청구법인 1”이라 한다)은 철강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77 년에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청구법인 2”라 하고, 청구법인 1 과 합하여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89 년 설립되어 2001 년에 청구법인 1 을 인수하여 청구법인 1 에게 경영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청구법인 1 의 지주회사임
- 청구법인 1 은 2003 년에 100%의 지분을 투자하여 ○○○ 현지에 2 차 가공제품 제작 · 판매 업체인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청구법인 1 의 지분은 청구법인 2 가 81%, 청구법인 2 의 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AAA 가 68.4%, AAA 의 배우자인 BBB 가 9.4%, AAA 의 처남인 CCC 와 DDD 가 각 3.7%와 2.7%를 보유함
- 청구법인 1 이 2016 사업연도~2019 사업연도 동안 ○○○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중 지급기한을 75 일(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90 일, 120 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6 조 제 7 항 단서의 ‘사실상의 자금거래’에 해당되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보아 아래 표 2 와 같이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 ✓ 청구법인은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결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1 은 쟁점매출채권을 통상의 지급기한인 75 일의 회수기간보다 약 610 일 이상을 지연회수하고도 별도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과는 달리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국제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조심 2016 구 3332, 2017.11.2., 같은 뜻임)

- ✓ ○○○의 자금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청구법인 1의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 1은 제 3자 거래처와 달리 ○○○에 대한 매입채무는 조기에 지급하고, 매출채권은 지연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다.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2022-국제세원-0235, 2022.05.04)**

### <예규 전문>

####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네덜란드 법인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甲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을 甲 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甲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출자전환된 채무가액을 초과함

(질의요지)

- (질의 1)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 시, 동 초과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 회신

- 네덜란드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0 호 카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http://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http://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2.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